

04

##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

#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

법적 근거 등    공직자윤리법, 원전감독법 + 임직원윤리행동강령

퇴직자  
법적 제한

## <퇴직자 취업제한>

- 퇴직일(재산등록의무 면제일)로부터 3년간
- 퇴직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제한

\* 주임급 퇴직자: 소속부서 기준 / 수석급 이상 퇴직자: 기관업무기준

## <행위제한>

- 업무취급제한
  - 본인 처리업무 영구취급 금지
  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(2+2)
- 부정한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
#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

취업심사대상인지 여부 확인 : 재취업 전 인사팀에 문의

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절차

1. 퇴직일(재산등록의무 면제일)로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

2.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

-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, 시장형공기업, 공직유관단체, 사립대학, 종합병원, 사회복지법인, 법무법인, 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
- ※ 취업제한기관 확인 : 인사혁신처 고시 확인(공직윤리시스템 [peti.go.kr](http://peti.go.kr))

3. 우리회사 원자력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인지 여부 확인

-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은 취업 불가(취업 심사 대상 아님)
-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18조(퇴직자의 취업제한), 원감법(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) 제15조(임직원의 취업제한)
- ※ 시험검증기관 확인방법 :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 - 성능검증관리 - 인증서 검색

#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

##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

(주임급) 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

(수석급 이상) 퇴직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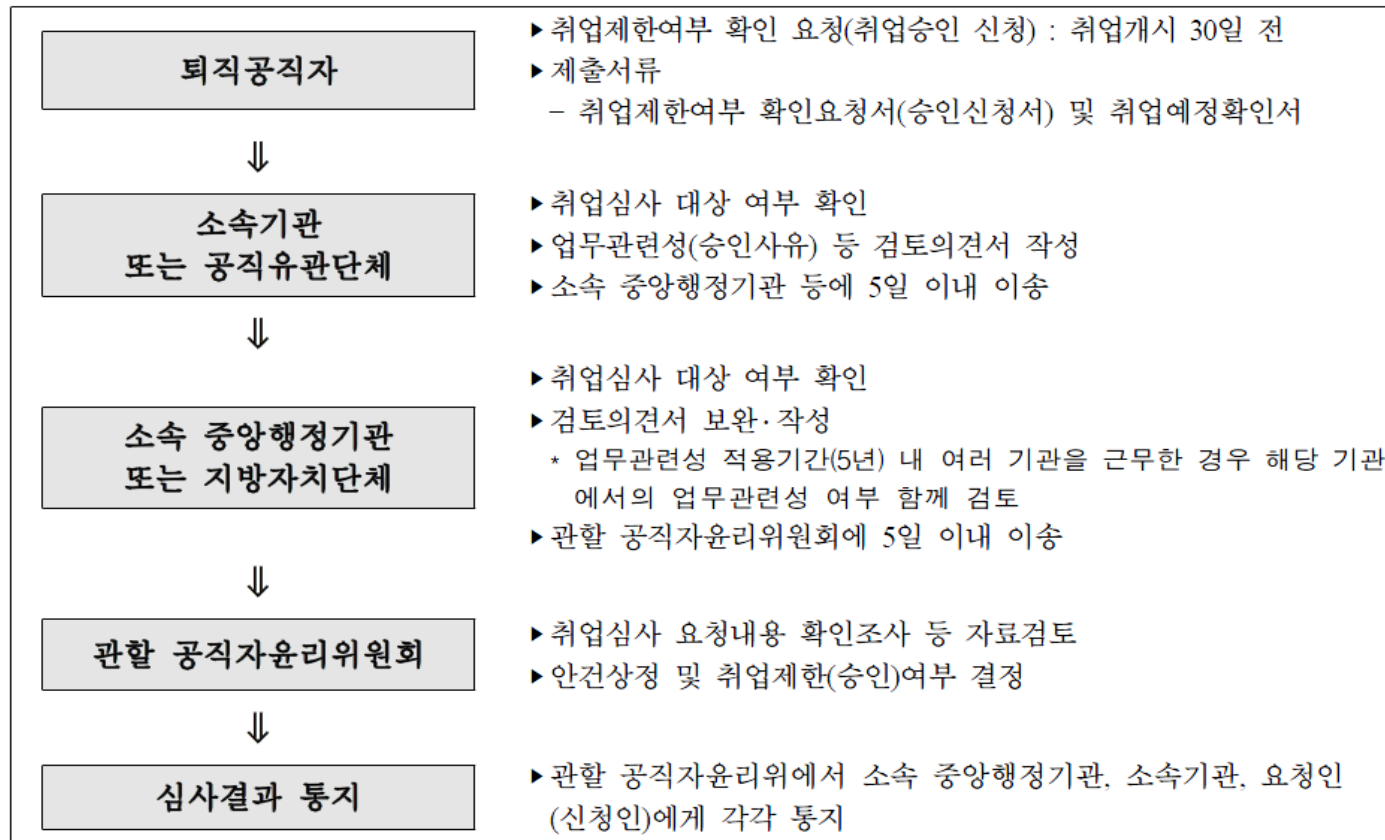
##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(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)

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→ **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** 또는 **취업승인 신청**

-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/장려금/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의 재정 보조 제공 업무
-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
#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

##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



※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상 월1회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,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원회 개최 3주 전 수요일까지 접수되어야 당월 안전 심사 가능

#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

##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 제출 서류

1.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(취업승인 신청서) → 본인 작성
2.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→ 본인작성 및 취업예정기관 확인(직인 날인)
3.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→ 회사에서 검토
4. 인사기록카드 사본
5.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
→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및 조직도, 한국전력기술의 정관, 조직도, 직제규정 등
6. (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)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
→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및 조직도, 한국전력기술의 정관, 조직도, 직제규정 등
7. (취업승인 신청 시)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
8.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시 본인이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

#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

## 임의취업 일제조사(반기별 실시)

-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
  -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퇴직자 취업 현황 일괄 조회하여 각 기관에 제공
-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
  - 과태료 부과(1천만원 이하)
  - 임의취업사유서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서류 제출
    - ※ 자진퇴직자의 경우 취업확인서, 임의취업사유서, 퇴사확인서 등을 제출
-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 요구 가능

#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 내용

## 취업이력공시 제도

- 개요 :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다음해 2월말 공시
- 대상자 :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자
- 공시항목
  - 취업심사대상자 성명, 퇴직일,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, 직위(또는 직급)
  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, 취업일, 직위(또는 직급)

## 퇴직자의 취업사실신고

- 수석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우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함(인사팀에 취업사실신고서 제출)
- 취업제한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 후 10년간 취업사실신고 의무 발생(취업제한기관 취업시)
- 우리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됨
- 취업사실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#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 내용

##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

- 개요 :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우리 회사가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음
- 대상자 : 우리 회사 수석급 이상 퇴직자
- 적용기간 : 퇴직 후 2년간

##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

- 개요 :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기관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
- 대상자 :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자
- 제출시기 :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회사에 제출  
- (예) 1911일자 퇴직 → (1차) 2011이후 1개월 이내(1813) 제출 / (2차) 2111이후 1개월 이내(2113) 제출
- 업무내역서 기재사항
  -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
  -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등